

□ [고객안내문] RIA제도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RIA(국내시장복귀계좌)를 활용해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펀드, 해외주식, 해외투자 ETF·ETN(이하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RIA에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오니 RIA가 아닌 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RIA”)'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RIA(타 증권회사 포함)를 개설했거나, 2026년 내에 RIA 개설을 계획 중인 고객께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RIA의 세제혜택이 축소됩니다.

☞ RIA는 해외에 투자된 자산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RIA를 개설한 고객이 모든 금융회사에서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연금저축, ISA, 신탁·일임 계좌 등 포함)를 통해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RIA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게 됩니다.

동 사항은 RIA를 개설하기 전이라도 2026년 내에 RIA를 개설한 동일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하거나, 또는 RIA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세제혜택 축소 대상 상품

☞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순매수 시 RIA의 세제혜택 축소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설정·설립된 해외주식형 펀드(펀드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 '해외주식(국외상장주식)', '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ETN'입니다. <아래 표 참고>

※ RIA 계좌 혜택 차감 대상상품(소득공제 차감)

대상 상품군		법 및 시행령(안)	세부 상품	비 고
국외상장주식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시장 상장 주식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시장 상장 주식(DR포함)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DR·ETF·ETN	개인이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국외 상장주식 대체재산	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 ETN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성지수 포함)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국내 설정·발행 ETF와 ETN	해외상품*을 기초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ETN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주식, 채권, 원유 등 상품, 통화 등 또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등)이나 그 가격을 기초로 만들어진 지수	기초자산은 제한없이 모든 해외자산이며, 편입비용 요건 없음
	국내 설정·설립 해외주식형 펀드 ※모자형·재간 접형·합성형 펀드 제외	펀드 설정·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해외주식형펀드 ① 펀드 설정·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 ② 3개월(또는 설정일부터) 평전기준 집합 투자재산 중 해외주식등* 비중 60% 이상 *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DR, ETF, ETN 포함	해외주식등에 포함되는 자산 기준은 개인이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3. 순매수 시점별 가중치 차등 적용

☞ RIA가 아닌 다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한 금액은 2026년 중 거래 시점에 따라 금액이 반영되는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1~5월 : 순매수 금액의 100% 반영
- 6~7월 : 순매수 금액의 80% 반영
- 8~12월 : 순매수 금액의 50% 반영

(※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향후 RIA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규모가 커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RIA계좌 가입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